



새 만 금 개 발 청

수신 (주)산하첨단소재
(경유)

제목 (주)산하첨단소재 새만금산단 입주계약해지 처분 고지

1.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입주관리단-160(2026.2.4.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호, 1185(2026.4.10.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안내))호 및 308(2026.5.6. 청문주재자 의견서)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새만금산단 입주계약의 해지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새만금산단 입주계약 해지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입주계약 체결 후 3년 내 공장 건설 미착수 및 공장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

다. 처분의 법적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2호

라. 처분 대상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주)산하첨단소재	장재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090	공장 건설 미착수 공장 준공 사실상 불가능	입주계약 해지

마.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분통지서가 도달된 때

바. 기타 사항

- 1)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그 밖에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입주관리단(☎ 063-733-1253, 11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